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1859호
2020년 9월 22일(화)

차 례

【 공 고 】

-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양주시 편집 : 홍보기획관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449호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2.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 내용상 미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가다듬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 함.

2. 주요내용

- 1)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 신설(안 제20조)
 -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항 제2호 다목 신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제3항 신설)

3) 사용료 부과 ·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안 제25조)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개정)
-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신설)

4)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 제26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5) 기타 자구 수정(안 18개 조)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2항에 따른
- 배수설비설치의무자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 당해 → 해당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남양주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상하수도관리센터),
전자메일 : ksy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기획팀
☎ 031) 590 - 8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을 “(하수관로 준설)”로,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침수·장마”를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로 하며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관거의”를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로,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지공사”를 “철거공사”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등”을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으로,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을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으로, “일반행정”을 “일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를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용을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로, “별지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연막·염료·CCTV”를 “연막·염료·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로,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의 “별표2에 의하며”를 “별표 2에 따르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로, “의한 공공하수도”를 “따른 공공하수도”로,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수도급수사용료”를 “상수도 급수사용료”로, “수도요금고지서”를 “수도요금 고지서”로 하고,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제3항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제4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호가목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나목과 다목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 각 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의 “망실”을 “분실”로, “검사유효기간”을 “검사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로, “같은”을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의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건축물의”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으로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준공 또는 표시변경”을 “인·허가 또는 승인”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를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로 하고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하며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공공하수관거의”를 “공공하수관로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의2의제1항 중 “하수관거정비로”를 “하수관로정비로”로 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제24조제1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를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소관 담당관 · 과		하수처리과
입안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하수처리과장 박 승 복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하수기획팀장 김 경 수
	담 당 자 성명 · 전화	곽 소 연 (행정 8234)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하수도법」</u>----- ----- ----- <u>필요</u>----- ----- -.</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u>제15</u> <u>조제2항</u>----- ----- ----- <u>지정하려는 경우에</u> <u>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u> <u>한다)로부터 직선거리</u> ----- -----.</p>
<p>제5조(하수관거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한다.</p> <p>②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p>	<p>제5조(하수관로 준설) ① ----- <u>하수관로</u>----- -----<u>하수관로</u>----- -----.</p> <p>② <u>시장은 하수관로 청소 및 준</u> <u>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u> <u>하며, 침수·장마</u> ----- ----- <u>판단될 경우에는</u> <u>수시로</u> ----- <u>하</u> <u>여야</u> -----.</p>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

제11조(공사시행) ① -----

----- 철
거공사-----.

1. ----- 등의 -----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

-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 제1항제1호-----.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

----- 일반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별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

-----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용을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미리 납부-----
-----.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

----- 별지 서식-----

-----.

----- 따른 -----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
-----.

② ---- 제1항에 따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 제4항에 따른 -----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

-----.

③ -----
----- 연막·염료·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에 의하며, 그 밖의 업종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

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공
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따라 ----- . -----

③ -----
별표 2에 따르며-----
-- 필요-----
-----.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
----- 따
른 공공하수도 -----
---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
-----.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 상수도 급수사용료-----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이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이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이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남양주시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생략)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

----- 수도요금 고지서-----
-----.

② 제1항에도 -----

-----.

③ 제4조에 따라 -----

-----.

④ 제1항에 따라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 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3.·4. (생 략)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제 8조에 따라 -----

<삭 제>

<삭 제>

- 3.·4. (현행과 같음)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 제17조 각 호에 따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19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② (생략)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
----- 해당 -----

-----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에 따른 -----
----- 않고 -----

----- .

④ -----
----- 않은 -----

-----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

----- .

1. (현행과 같음)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m^3/일$)에 단위단가($원/m^3/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m^3/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남양주시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표시변경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

산정한다.

3. -----
-----.

가. 제1호에 따라 -----

-----.

나. -----

----- 범위 -----
-----.

4.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인·허가
또는 승인 -----.

② 제22조에 따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해당 -----

 -----.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제2항에 따른 -----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생략)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

----- 하수관로 -----
-----.

② 제1항에 따른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른 -----

-----.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

----- 공공하수관로 -----
----- 하수관로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경영악화로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하수와 관련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공공하수관로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해당 -----
-----.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

----- 하수관로정비 -----

-----.

②·③ (현행과 같음)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접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사유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시 별표 1 중 업종별 요율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 <항 신설 2014. 03.11, 개정 2019. 8. 8.>

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

제24조(감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른 -----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별표 1 -----

-----.

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감면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감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

⑥ -----

-----.

-----.

제2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날-----
----- 1
0일 이내-----
-----.

제26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7조(시행규칙) -----
- 필요-----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450호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2.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규칙 내용상 미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가다듬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 함.

2. 주요내용

- 1)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신설(안 제26조)
 -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제1항)
 -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항)

-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 하여야 하며, 조례 제25조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 또한 같다.(제5항)

2) 기타 자구 수정(안 14개 조)

- 제1항에 의한 → 제1항에 따른
- 7일이내 → 7일 이내
- 징수치 아니한다. → 징수하지 않는다.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남양주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상하수도관리센터),

전자메일 : ksy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하수기획팀

[☎ 031) 590 - 8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의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로 하고 “자중”을 “자 중”으로 한다.

제7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내”를 “기간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의 “의한”을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상황등을 감안하여”를 “상황 등을 감안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16.5제곱미터이상”을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용기간등”을 “사용기간 등을”로, “1세제곱미터미만”을 “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교체실시후 다음 점검때”를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항 규정에”를 “전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해수등”을 “해수 등”으로,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며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를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으로 하며 “아니한”을 “않은”으로, “이경우”를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호”를 “각 호”로, “징수치 아니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7항 “2호이상”을 “2호 이상”으로 하고 “2세대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각호별”을 “각 호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2세대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입증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경우에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5항”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제17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의하여”를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및 조례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면제사유”를 “감면사유”로 하며 “면제받을”을 “감면받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경과되지 아니한”을 “지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25조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 또한 같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하수처리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하수처리과장 박 승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기획팀장 김 경 수
	담당자 성명·전화	곽 소 연 (행정 8234)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u>7일</u>이내에 공사시가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u>10일</u>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u>기타</u> 사유로 인하여</p>	<p>제1조(목적) ----- ----- ----- <u>필요</u>----- -----.</p> <p>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7일</u> 이내----- ----- -----.</p> <p>③ ----- ----- <u>10일</u> 이내----- ----- -----.</p> <p>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그 밖의</u> -----</p>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시장이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신청 수리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비의 산정등) ① (생략)

②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취소등)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
-----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

-----.

제4조(공사비의 산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한까지 -----.

제6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 자 중-----

-----.

제7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취소등) -----
각 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1. (생략)

2. 삭제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때

5. (생략)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생략)

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대행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시공대행업자에게 통지한

1. (현행과 같음)

3. 제6조에 따른 -----

4. 제8조에 따른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에 따른 -----

7. 그 밖에 -----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③ -----
----- 기간 내 -----
----- 해당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후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차 경고조치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
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
었을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한
하여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
다.

제13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
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
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
의 1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
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
치된 경우는 양수능력과 시
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

-----.

제9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③ -----

----- 해당 -----
-----.

제13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

----- 각 호 -----
--.

1. -----
가. -----

----- 따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수시간

나. (생략)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생략)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플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등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않는 -----

----- 상황 등을 고려하여 -----.

다. -----

----- 16.5제곱미터 이상 -----

----- 사용기간 등 -----
----- 1세제곱미터 미만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정산 조정 한다.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생략)

②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② 제1항에 따른 -----

- 별표 2-----
-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

④ 제3항에 따른 -----
-----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에도 -----

-----.

③ ----- 해수 등-----
----- 2개 이상-----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⑧ 조례 제15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가정용과 가정용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

----- 각 호 -----
-.

1. -----

----- 각 호별 -----

-----.

2. ----- 2세대 이상 -----
----- 증명서류 -----

-----.

⑧ -----

----- 경우에 -----
----- 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
----- 제30조제5항-----.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③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30일이내로 한다.

제19조(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면제받을

-----.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30
일 이내-----.

제19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자 및 조
례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따른 -----
-----.

③ -----
----- 감면받은 -----
----- 감면사유 -----
----- 감면받을 -----.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수 있다.

④ (생략)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액중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

지나지 않은 -----

-----.

④ 제1항에 따라 -----

----- 따른 -----

-----.
-----.

제26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조

남 양 주 시 보

제1859호

사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25조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 또한 같다.